

[서식 예] 구상금청구의 소(대위변제한 건물매수인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구상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○○○만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사실관계



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◈◆◆로부터, 근저당권자 소외 ●●은행, 채무자 피고, 근저당최고금액 ○○○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소외 ◈◆◆ 소유의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다세대주택 203호를 매수하면서, 위 근저당권은 소외 ◈◆◆가 20○○. ○. ○.까지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○○○○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있습니다(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, 갑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).

2. 원고의 대위변제

- 가. 소외 ◈◈◈는 위 약정과 달리 위 소외 ◉◉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외 ◉◉은행은 위 주택을 경매하겠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고(갑 제3호 중 통고서 참조),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◈◈◈와 피고에게 위 ○○○만원을 20○○. ○. ○까지 조속히 변제해줄 것을 최고하였습니다(갑 제4호 중 통고서 참조).
- 나. 소외 ◈◈◈와 피고는 위 날짜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, 원고는 위 주택이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○○○만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(갑 제5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참조).

3. 피고의 책임근거

가. 원고는 소외 ◈◈◈가 현재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소외 ◉◉은 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채무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을 지 급 받고자 합니다.

나. 책임의 근거

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(물상보증인)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,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,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(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8403 판결).

4. 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○○○만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



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

1.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3호증 통고서

1. 갑 제4호증 통고서

1. 갑 제5호증 대위변제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 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